

주택분양보증서

보증서번호 제 01292020-101-0012500 호 보증서출력번호 2020-0129-00014515

보증금액	일금 육억일천이백구십만팔천사백원정 ₩ 612,908,400—			
사 업 명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상가)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주채무자 (시행사)	상호	한신공영(주)	대표자	태기전
특기사항	1. 입주금납부계좌번호 : 수협 1010-1224-7818 괴정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한신공영(주) 2.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제1호의 입주금납부계좌, 보증약관 제4조(보증사고), 보증약관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및 제2조(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를 반드시 명시할 것 3. 첨부 : 형별 보증금액 산출내역 1 부, 4. 총 보증금액에는 부가계약 보증금액 0원이 포함된 금액임 끝.			

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별첨 약관에 따라 우리공사가 이를 보증합니다
(별첨 약관은 이 보증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2020 년 12 월 17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재광

대리인 서울남부지사장 김범곤

담당자 : 김선영
전화번호 : 02-6009-797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 5층 (서초동, 정보통신공제조합)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택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2. 주택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택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택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택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택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획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택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망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망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감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택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임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금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사·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택무자 등(이하 "시공사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증회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보증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금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금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 토지매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금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⑤보증회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택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금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금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보증회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금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보증회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⑨분양이행의 경우 보증회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획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자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 ⑩보증회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지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택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주택분양보증약관

제7조 (분양이 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보증회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가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을(지체 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를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에 정일로부터 분양이행 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대하여 원래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보증회사가 알린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를(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를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8조 (대위 및 구상)

①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보증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으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보증회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보증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보증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보증회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①보증회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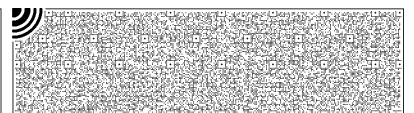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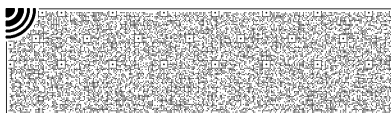
②보증회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증금액 산출내역서(복리시설용)

1. 주택 보증금액

(단위:원)

면적별 (㎡)	공 급 세 대 수	층 수 구 분	보증금액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	1회 6회	2회 7회	3회 8회	4회 9회	5회 10회
83.0667	1	1	110,292,000	36,764,000	0	36,764,000	36,764,000			
78.1075	1	1	103,674,480	34,558,160	0	34,558,160	34,558,160			
52.6915	1	1	71,217,120	23,739,040	0	23,739,040	23,739,040			
82.4468	1	1	111,552,480	37,184,160	0	37,184,160	37,184,160			
80.5871	1	1	106,825,680	35,608,560	0	35,608,560	35,608,560			
82.4468	1	1	109,346,640	36,448,880	0	36,448,880	36,448,880			



보증금액 산출내역서(복리시설용)

2020년 12월 17일 발급한 보증서 번호 제 01292020-101-0012500 호의

보증금액 산출내역 으로서 위 평형별 (세대별) 계약금 및 중도금 이내에서
세대별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2020년 12월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대리인 서울남부지사장 김범곤

